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출입국기록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세대정보 등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안 별표1)

- 매수인이 거래신고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하도록 함

나.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안 별표2)

- 국토교통부장관과 신고관청이 신고내용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 요청가능한 자료에 출입국정보와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등을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없 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란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란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아목(종
전의 사목) 중 “다음 의”를 “다음의”로 한다.

사.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
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두지 않을 경우(매수인이 외
국인인 경우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이 거래신
고 당시 기재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하
다)는 다음의 사항

- 1) 위탁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 2) 지정한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별표 2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출입국관리법」 제12조 및 제28조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심사 및
출국심사에 관한 자료 중 출입국기록
19.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외국인에 관한 정보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을 하는 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세대주와 세대원 구성 자료, 직장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구성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402